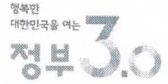


정부3.0, 국민과의 약속



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



수신 인천세관장(이사회물과장)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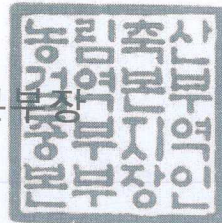
제목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이사회물 및 특송화물 등의 수입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해외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기준(ISPM)에 따라 소독 후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소독하지 않았거나 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는 수입 후 지체 없이(10일 이내), 수입 통관 전에 우리기관(032-722-8264)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15년 미 소독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1부. 끝.

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



식물검역2과	식물검역2과	식물검역2과 전결	2015. 11. 16.
주무관 송영호	주무관 최영섭	장	허만환

협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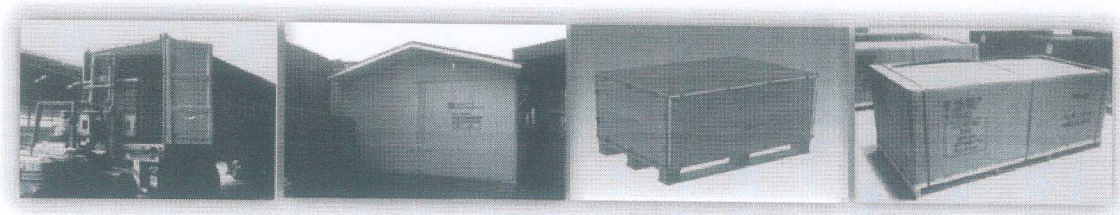
시행 식물검역2과-886 (2015. 11. 16.) 접수 이사회물과-2628 (2015. 11. 17.)

우 2213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(주안동) / <http://www.qia.go.kr>

전화번호 032-722-8264 팩스번호 032-433-8536 / wlxothd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【붙임】

미 소독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건



2015. 11.



농림축산검역본부
중부지역본부

미소독 목재포장재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

-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·나무상자·받침목(짐갈개)·목재용기·지지목(버팀목)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·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 산물. 단, 가공된 목재는 제외
- 수입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해외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기준(ISPM)에 따라 소독 후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는 수입 후 10일 이내에 우리 기관에 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조치
-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(검역결과 처분 등) 7항에 의거, **미소독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하였으나,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 통관 시**
→ **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**
※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: 제12조의2제1항 (목재포장재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

<과태료 부과 사항>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사.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	법 제50조제2항 제2호	100	200	400

-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2014-12호, '14.7.25.)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참조(<http://www.qia.go.kr>)
※ 알림마당 → 법령정보 → 검역본부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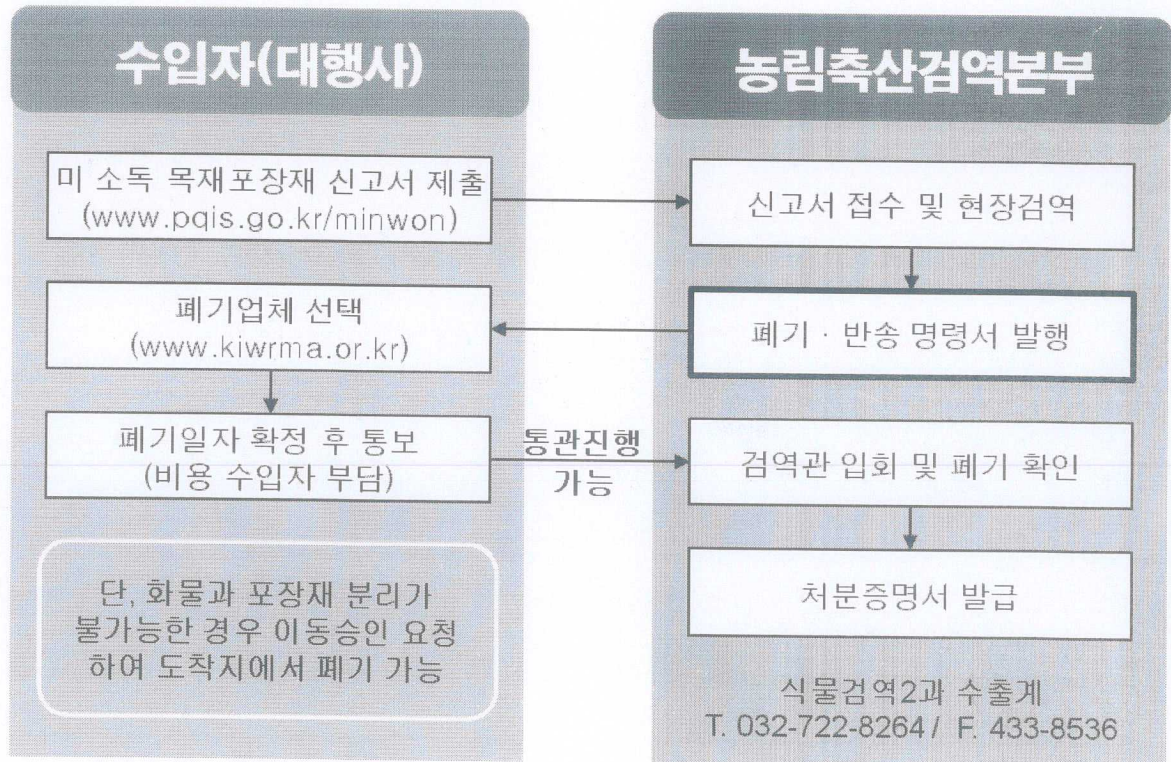
2 미소독 목재포장재 전산 신고 방법 안내

□ 미 소독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하였을 경우,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 시스템(<http://www.pqis.go.kr/minwon>)에서 지체 없이 신고 가능

※ 검역신청서제출 → 미소독 목재포장재 →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

□ 미 소독 목재포장재 폐기진행 절차





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◆ 담당부서 :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
- ◆ 담당자 : 식물검역2과
- ◆ 연락처 : Tel. 032)722-8264, Fax. 032)433-8536
- ◆ 주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
- ◆ 홈페이지 : www.qia.go.kr(1588-5117)